

[사 건 명] 행심 2019 - 3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0. 점심시간(오후12시30분~1시 사이)에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피해학생이 운동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여 청구인 및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잡고 때렸음.
- 나. 2018.11.21.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를 개최하여, 청구인 및 여러 학생들이 한 학생을 놀리면서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 다. 2018.11.26.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 조치함.
- 라. 2019.02.2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점심식사 후 급식실 앞에서, 피해학생이 놀자고 한 것을 청구인이 거절하자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머리와 배를 때렸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피해 운동장 반대편으로 피신하였으며 피해학생이 운동장을 가로질러오자 청구인은 여느 때처럼 괴롭히려 오는 줄 알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 온다” 라고 말을 한 것임.
-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피해학생은 이후 교실로 들어가려는 청구인의 머리를 잡고 때리며, 발로 배를 찰. 이를 본 목격학생이 담임교사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학부모에게 알리고 진술서도 작성하였으나, 학폭위에서는 신고 학생들 없이 학부모와 위원들, 경찰관에 의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함.
- 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의 참여 없이 CCTV 기록과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을 해석하였으며,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맞는 CCTV 기록은 무시하고, 학폭위에서 청구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학생의 진술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자료에서 제외시켰음.
- 라. 이 사건 처분 이전, 청구인은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3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묵인하였으며, 생활통지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이었음.
- 마. 피청구인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목격자의 진술도 무시하는 등 청구인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처분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정된 양식에 의거 학폭위 참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가급적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CCTV 말미에 있었던 영상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학폭위에서는 CCTV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의 사안으로써 연속된 과정의 일부분으로 집단 괴롭힘에 대한 피해학생의 자기 방어로 판단하여 조치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았음.
- 나. 청구인이 먼저 급식실 앞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들과 보호자의 확인서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다만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측이 접수한 사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요하게 논의하지 않고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것임.
- 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을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보통(2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매우높음(0점), 화해정도 매우높음(0점)으로 판단하여 총 5점으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화해 의사가 있어 ‘1호 서면사과’ 조치로 경감하였음.
- 라.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이 사건 학폭위 이후로 두 차례 학폭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 모두 전학을 한 상태임.
-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안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이나 부당성은 없으며,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CCTV 영상,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8. 10. 10. 점심시간에 ■■■■, ㉸㉸㉸, ■■■■, ☆☆☆, ●●●, ▨▨▨ 등과 함께 운동장에 있었고, 피해학생이 다가오자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피해학생을 폭행하였음.
- 그 후 피해학생도 청구인 등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을 폭행하여 상호 폭행을 하였음.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학교 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이 2018. 10. 10.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폭행할 때 폭행에 가담한 사실 및 그 후 피해학생과 상호 싸운 사실은 인정되는 바,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

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는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정도 매우 높음(0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총점 5점으로 3호 조치에 해당하나, 청구인도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점 등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1호 서면사과로 경감 처분하였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